

금현물시장매매거래설명서



- ◆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금현물 거래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관련 규정에 의거, 당사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금현물 거래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.
- ◆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기록을 남기시는 경우,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

👁️ 고객님께서서는 상품 가입 前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·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▣ 유사상품과 구별되는 특징

※ 본 설명서 상의 금 현물시장은 한국거래소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("KRX금시장"이라 함)을 의미하며, 금 현물시장에서의 매매거래는 일반회원(투자중개업자 : 증권사·선물사)에 대한 매매거래 위탁을 통해 동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매매거래를 의미합니다.

◦ 본 설명서의 "금"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7제1항에 따른 금지금(金地金) 중 한국거래소가 정한 품질 및 외형요건을 만족하는 순도 99.99%, 중량(1kg 또는 100g)인 골드바(Gold bar)를 말합니다.

<유사상품과의 비교표>

		KRX금시장	은행 골드뱅킹	금펀드
거래단위		1g 단위	0.01g	상품별로 상이
가격		공정가격 -시장에서 형성되는 실시간가격	고시가격 -원화환산된 국제가격을 고려한 은행고시가격	상품별로 상이
장내거래	수수료	증권사 온라인수수료(0.2%)	통장거래시: 매매기준율 x 1% 실물거래시: 매매기준율 x 5%	선취수수료 (1~1.5%)
	세금	양도소득세 면제 부가가치세(10%)면제	매매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(15.4%)	매매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(15.4%)
실물인출	인출비용	10,000원+인수도단위당 20,000원	실물거래만 인출가능 (실물거래수수료 5%에 포함)	실물인출불가
	VAT	거래가격의 10%	거래가격의 10%	
금인출		증권사 지점에서 인출가능 (약 2일 소요)	은행 영업점에서 인출가능 (약 1주 소요)	-

▣ 민원·상담이 빈번한 숙지필요사항

Q1. 금 실물의 인출도 가능한가요?

- 계좌를 개설한 금융투자회사를 통해 인출(수령)가능합니다. 계좌거래와는 달리 금 실물의 인출시에만 10%의 부가가치세와 한국예탁결제원 및 해당 금융투자회사로부터 소정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.

Q2. 장외 금 실물투자과 KRX금시장을 이용한 장내거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?

- 장외 실물은 보통 디자인비용·세공비용·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거래하지만 장내에서는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순수 금가격*으로 거래가능합니다.

* 국내금가격 결정요인: 국제금시세 + 미국달러가치 + 국내 수급요인

▣ 투자위험 등급 : 금현물은 금융상품이 아니므로 별도의 투자위험 등급이 없습니다.

▣ 발생가능한 불이익 사항

- (가격변동위험) 금융투자상품과 같이 해당 금지금(골드바)의 가격변동에 따른 매매손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(금의 화폐적 기능에 따른 위험) 일반적으로 금은 과거 화폐적 기능을 담당하여 국내외 경제급변 상황에서 중요한 대외지급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. 따라서, 금융위기 등과 같은 경제상황의 변화 등에 따라 금가격이 급변할 수 있습니다.

▣ 민원·상담·분쟁조정 연락처

-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(www.myasset.com) 또는 고객센터(1588-2600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e-금융민원센터(<http://www.fcsc.kr>) 또는 대표번호(국번없이 ☎1332) 등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

I. 금 현물시장 매매거래의 위험성

1. 가격변동 위험
2. 금의 화폐적 기능에 따른 위험

II. 금 현물시장 개요

1. 금 현물시장에서의 매매거래
2. 주요 거래제도
 - 가. 매매거래 대상
 - 나. 매매거래단위, 호가수량단위, 실물인출단위
 - 다. 매매거래시간 및 호가접수시간
 - 라. 호가의 종류 등
 - 마. 호가의 제한
 - 바. 매매체결방식
 - 사. 결제방식
 - 아. 실물 인출
3. 거래방법
 - 가. 주문의 방법
 - 나. 위탁증거금 납입
4. 금 현물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조세 관련 유의사항
 - 가. 금 현물시장 내에서의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 면제
 - 나. 금 실물 인출시 부가가치세 납부
 - 다.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
5. 기타
 - 가. 수수료에 관한 사항
 - 나. 장외 계좌간 대체 금지

I. 금 현물시장 매매거래의 위험성

1. 가격변동 위험

- ▶ 금융투자상품과 같이 해당 금지금(골드바)의 가격변동에 따른 매매손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2. 금의 화폐적 기능에 따른 위험

- ▶ 일반적으로 금은 과거 화폐적 기능을 담당하여 국내외 경제급변상황에서 중요한 대외지급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. 따라서, 금융위기 등과 같은 경제상황의 변화 등에 따라 금가격이 급변할 수 있습니다.

II. 금 현물시장 개요

1. 금 현물시장에서의 매매거래

본 설명서 상의 금 현물시장은 한국거래소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현물시장("KRX금시장"이라 함)을 의미하며, 금 현물시장에서의 매매거래는 일반회원(투자중개업자: 증권사·선물사)에 대한 매매거래 위탁을 통해 동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매매거래를 의미합니다.

2. 주요 거래제도

가. 매매거래 대상

- ▶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26조의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7제1항에 따른 금지금(金地金) 중 한국거래소가 정한 품질 및 외형요건을 만족하는 순도 99.99%, 중량(1kg 또는 100g)인 골드바(Gold bar)를 말합니다.
- ▶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적격금지금생산업자가 생산하거나 적격금지금수입업자가 수입한 금지금(골드바)로서 순도, 중량, 브랜드, 제조일련번호 등이 각인되어 있습니다.

※ 골드바(Gold bar) 품질 관리

- 국내에서 생산된 골드바
: 품질인증기관(한국조폐공사)의 기술요건 심사 및 한국거래소의 외형요건 심사 등을 거친 생산업자가 생산한 골드바만 거래
- 해외에서 수입되는 골드바
: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수입업자가 수입하는 해외 브랜드(국제적 신뢰도가 높은 브랜드)의 골드바만 거래

나. 매매거래단위, 호가수량단위, 실물인출단위

- ▶ 매매거래단위 및 호가수량단위는 **1g**이고 호가가격단위는 **10원**이며, 1g당 원화(예시:

50,000원)로 가격을 표시하고 1회에 **최대 5,000g(5kg)까지 호가가** 가능합니다.

- ▶ 실물인출단위는 인수도단위(1kg 또는 100g)입니다.

다. 매매거래시간 및 호가접수

- ▶ 매매거래시간 : **09:00 ~ 15:30**

호가접수시간 : **08:00 ~ 15:30** (매매거래시간 개시 60분 전부터 장종료시까지)

- ▶ 매매거래 개시 전 60분간 시가단일가 결정을 위한 호가접수를 받고 매매거래 종료 전 10분 동안 종가단일가 결정을 위한 호가접수를 받으며, 그 이외에는 접속매매 체결을 위한 호가를 접수 받습니다.

라. 호가의 종류 등

- ▶ 호가는 **지정가호가**(종목·수량·가격을 지정하는 호가)만 가능하고 전량충족조건(**FOK : Fill or Kill**) 또는 일부충족조건(**IOC :Intermediate or Cancel**)의 호가조건 부여도 가능합니다.
- ▶ 호가는 접수 시점부터 매매체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일 장종료시까지 효력이 유지됩니다.
- ▶ 금 실물사업자의 생산 등을 위해 필요한 즉시 수요를 고려하여 단일가격에 의한 경쟁매매에 한하여 금 실물사업자에게 동일한 가격에서 우선 체결권을 부여합니다.

마. 호가의 제한

- ▶ 호가제한폭은 **기준가격 대비 상하 10%**이고 **기준가격은 전일 종가**이며 전일 종가가 없는 경우에는 최근 매매거래일의 종가가 기준가격이 됩니다.
- ▶ 전산시스템 장애 또는 매매거래 폭주로 매매거래가 중단될 경우에는 모든 호가접수의 제한이 가능합니다.

바. 매매체결방식

- ▶ 시가·종가 결정시 및 매매거래종단 후 재개시 최초 가격결정은 단일가격에 의한 경쟁매매방식으로 체결되고, 그 이외의 매매거래는 복수가격에 의한 경쟁매매(접속매매)방식으로 체결됩니다.
- ▶ 단일가격에 의한 경쟁매매에서는 가격·매매목적·시간우선의 원칙, 복수가격에 의한

경쟁매매에서는 가격·시간우선의 원칙으로 체결됩니다.

사. 결제방식

- ▶ 매매거래 후 금 현물시장의 결제일은 매매거래가 체결된 당일이며, 매매시마다 결제합니다.
- ▶ 결제 후 매수자는 보관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혼합보관 중인 금지금(골드바)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게 되고 매도자는 현금을 이체받게 됩니다.

아. 실물 인출

- ▶ 보관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혼합보관 중인 금지금(골드바) 중 본인의 지분에 대해 인수도단위(1kg 또는100g)로 인출이 가능합니다.
- ▶ 당일 17:00까지 실물 인출을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인출이 가능합니다.
※ 품질관리 등을 위하여 한번 인출된 금지금(골드바)은 다시 입고하여 한국거래소 시장에서 거래시킬 수 없습니다.

3. 거래방법

가. 주문의 방법

- ▶ 증권 및 장내 파생상품시장과 동일하게 전자통신, 전화, 문서 등의 방법으로 주문이 가능합니다.
- ▶ 금 현물시장에서는 한국거래소가 정하는 적격금지금생산업자 및 적격금지금수입업자가 매도한 금지금(골드바)만 거래되므로,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금을 매도할 수 없음에 따라 최초 매매거래는 매수부터 가능합니다.

나. 위탁증거금 납입

- ▶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현금을 전액 회사에 예탁하여야 하고(**현금위탁증거금을 100%**), 보관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 중인 금지금(골드바) 한도 내에서 매도가 가능합니다.

4. 금 현물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조세 관련 유의사항

가. 금 현물시장 내에서의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 면제

- ▶ 금지금(골드바)의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126조의7제1항제2호에 따라 금 현물시장 내에서의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.

나. 금 실물 인출시 부가가치세 납부

- ▶ 보관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혼합보관 중인 본인 소유의 금지금(골드바)을 인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126조의7제4항에 따라 공급가액(평균매수단가에 실물 인출 수량을 곱한 가액)의 10%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.

다.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

- ▶ 「부가가치세법」에 따르면 금 현물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대해 회사가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회사에 주문·체결과 관련하여 납부하는 위탁수수료 및 실물인출시 납부하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10%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.

5. 기타

가. 수수료에 관한 사항

- ▶ 회사는 위탁자로부터 주문수탁 및 금지금(골드바) 실물 인출과 관련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.

구분		수수료	비고
매매	오프라인	영업점/고객센터 0.5%	부가세 별도
	온라인	티레이더 0.2%	
	모바일	티레이더M 0.3%	
출고		10,000DNJS + 인수도단위당 20,000원	

나. 장외 계좌간 대체 금지

- ▶ 금 현물시장에서의 매매거래 이외에 계좌간 대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.